

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	2001. 10. 12	조례 제1261호
개정	2003. 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6. 10. 20	조례 제1469호
	2006. 12. 15	조례 제1480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1. 4. 15	조례 제1766호(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9호
일부개정	2018. 8. 30	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1. 4. 15, 2018. 7. 3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1. 4. 15, 2018. 7. 31>

1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2항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·제6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
2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08. 6. 16, 2011. 4. 15, 2018. 7. 31>

1.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에 따른 시 귀속분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

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[제목개정 2006. 10. 20]

제4조(기금의 귀속절차)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4. 15, 2018. 7. 31, 2020. 3. 25>

[전문개정 2006. 10. 20]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1. 4. 15>

1.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용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
3.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
4. 법 제90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
5.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
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
7.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8. 식품위생관련 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
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20>

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·보관업무와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6. 10.

20, 2008. 6. 16, 2020. 3. 25>

제7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8. 7. 31>

1.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

2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된다. <개정 2011. 4. 15, 2014. 8. 14, 2018. 8. 30>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03. 11. 18, 2006. 12. 15, 2010. 11. 25, 2014. 8. 14, 2018. 7. 31>

1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1명

2.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

3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과 임기 내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 <개정 2018. 7. 31>

[제목개정 2006. 10. 20]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당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1. 8. 9, 2018. 7. 31>

제10조(회계관리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 <개정 2003. 11. 18, 2010. 11. 25, 2014. 8. 14, 2018. 7. 31>

1. 기금운용관: 사회복지국장
2. 기금출납원: 해당업무 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11조(용자계획)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용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용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8. 7. 31>

제12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법 제47조 및 영 제21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1. 4. 15, 2020. 3. 25>

제13조(용자신청등) ①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8. 7. 3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③ 삭제 <2006. 10. 20>

제14조(용자한도 및 용자조건) 용자금의 업종별 한도액·용자조건·이자율·용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15조 삭제 <2006. 10. 20>

제16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

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20, 2018. 7. 31>

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[제목개정 2006. 10. 20]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3. 1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6. 10. 20 조례 제14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2. 15 조례 제1480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⑬ 생략

⑭ 「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⑮ 내지 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

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㉓ 까지 생략

㉔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보건소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식품위생업무담당”을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㉕ 부터 ㉗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76호,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
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㉖ 까지 생략

㉗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㉘ 부터 ㉚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
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㉘ 까지 생략

㉙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고용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
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복지돌봄국장”으로 하며, 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재정경제
국장”을 “고용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㉚ 부터 ㉜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
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고용경제국장”을 “사회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⑭ 부터 ④⑩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